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효 대상 국·공유지를 공고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 및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기준 규정(안 제13조의2)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공유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고 기한, 공고의 내용,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34조제1항, 제2항)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50퍼센트에서 70

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청이 조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다. 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22조제2호)

점용허가의 대상에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열수송관을 열수송관과 일체의 기능을 하는 열수송시설로 변경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점용허가 대상인 공동구와 일체의 기능을 하는 송전선로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 [별표2])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3.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아 국유지 또는 공유지 단독으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공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고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까지 지번·소유기관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를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구·송전선로”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거나 제2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중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를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구·송전선로”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가목 본문 중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다)”를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전력구 및 송전선로”로 한다.

마. 열수송시설 중 열수송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열수송관을 제외한 열

수송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제1호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주차장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주식 노외주차장 중 지평식 주차장만 해당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2)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나) 부대시설로 주차관리를 위한 2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별표 2에 제3호바. 및 제3호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규모 실내 생활 체육시설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 (다)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3,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사. 실내체육관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2 제3호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한다.
--------	--

별표 2에 제5호아. 및 제5호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보건소·보건진료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자.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나)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별표 2 제7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으”를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u> <u>2.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u> <u>3.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아 국유지 또는 공유지 단독으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u> <u>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공</u>

제14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u>법 제17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u>법 제24조제3항</u>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u>	<u>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고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까지 지번·소유기관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14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u>법 제17조제4항</u>----- ----- ----- ----- ----- ----- -----.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 -----. 1. (현행과 같음) 2. <u>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u>
--	---

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
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 18. (생략)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
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
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
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
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
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
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
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
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

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
구·송전선로 -----

3. ~ 18. (현행과 같음)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① -----

-----.

-----.

1. -----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생략)

<신설>

-- 70퍼센트 -----

2. (현행과 같음)

② 공원관리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거나 제2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9